양돈농가를 위한 상속설계에 대하여

김 미 성 CFP(국제공인 재무설계사)
(reddiver@mylp.com, 016-435-3290)

3개월 전 경기도의 양돈농가주 A씨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A씨는 30년 이상 양돈에 피와 땀을 흘린 결과, 일대에서 가장 성공적인 양돈농가로 소문이 자자했었다. 그런데 A씨 사후, 평소 화목하기로 소문난 A씨의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상속세 납부를 둘러싸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2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특히 상속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사전에 치밀하고 정밀한 계획이 없다면, A씨의 사례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호에서는 재무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상속설계와 관련해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과거 전통적 사회의 관습과 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시대에서는 상속의 문제는 자신의 부모형제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로서 사전적, 적극적인 대처는 금기시 되어왔다.

또한 사업의 승계도 그 가족경영, 소규모 자본, 비전문적인 경영으로 인하여 심지어 대기업의 경우도 사업의 소유권 및 경영권의 변동은 상속 내지 매매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경제환경의 변화, 금융 · 자본시장의 발달로 이제는 상속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상속설계는 민법과 관련된 법률적인 검토와 상속과 사전증여를 둘러싼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고려가 필요

하게 된다.

상속설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A씨의 경우에서 보듯이 상속재산에 관한 사전 유언이 없는 경우, 유가족과 이해관계인간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유언상속우선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유언이 없을 경우, 2차적, 보충적으로 법정상속이 적용된다.

A씨의 사례에서 보듯, 갑작스런 사망의 경우에는 유언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유언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적, 보충적 방법인 법정상속에 의해 남은 유가족이 상속분을 나눠가지게 된다. 법정상속에 의해 상속이 진행될 경우, 평소 고인에게 특별하게 기여한 자녀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재산배분과 장학사업 등과 같은 사회사업이 고인의 생각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최근 변화되는 사회상 중의 하나가 유언서를 미리 써 두는 것이다.

유언서 작성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의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경우 법에서 정한 꼭 필요한 내용과 증인의 유무, 검인 등의 절차가 민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유언에 의해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다. 그 외의 사항은 유효한 유언서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다.

법적인 권리의무에 관해서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것,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 신탁, 인지, 친생부인,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 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등** 9가지의 경우이다.

다음으로는 상속설계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살펴보겠다.

상속설계에서 세금관련 목표는 크게 절세와 적절한 납세방법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 대상은 사망자의 1% 정도가 해당된다.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일 경우,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과세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일 경우, 절세전략과 상속세 재원을 준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절세전략은 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기간별 절세 전략 그리고 상속재산 분산에 따른 전략으로 나눠진다.

상속재산은 금융자산, 보험자산, 부동산 등 재산 종류별로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다. 주식, 부동산 등 시가변동성이 큰 경우는 특히 시장상황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느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상속세부과가 달라지므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자산에 대해 재산 종류에 따라 상속공제액이 극대화 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전략을 세운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단기, 중기, 장기별로 전략을 수립한다. 단기는 개시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중기는 5년에서 10년 이내, 장기는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단기 전략에서는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상속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금융재산은 전액 상속과세 가액에 포함되지만, 부동산의 경우 시가의 70~80%로 결정되는 기준시가가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중 · 장기 절세 전략으로는 사전증여를 이용 비상속인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절세하는 방법이나, 향후 재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먼저 사전증여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고,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다든지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도 절세방법으로 고려할 만하다.

상속인에 따라서 절세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배우자, 자녀에 대한 상속재산은 일정한 부분이 공제되는 재산이다.

현행 상속세 과세방법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속, 증여세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사전분산 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상속재산 사전 분산 방법으로는 사전 증여 전략과 사전 처분 전략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속세 재원마련과 관련된 납세전략은 상속개시 전 납세할 액수를 예상, 평가하여 현금확보나 납세할 비용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상속세의 재원으로서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A씨의 사례에서 보듯, 사전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 30년 이상 공들여 쌓아온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설계의 경우에는 재무설계사외에도 별도로 세무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 위험관리와 노후설계와 마찬가지로, 상속설계에 있어서도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다.

※다음 호에서는 양돈농가의 실제 재무상담 사례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위험관리, 은퇴설계, 상속설계 등 재무설계를 원하시는 양돈농가들은 전화(016-435-3290)나 이메일(reddiver@mylp.com)로 문의 주시면 성심을 다해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양돈